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안호영 · 윤준병 · 박 정
박희승 · 김준혁 · 김종민
김우영 · 이춘석 · 민병덕
김한규 · 장철민 · 이성윤
안도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, 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환경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기후변화,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이 다양하게 전개되고, 특히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후·에너지·환경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후·에너지·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, 지능형 정책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

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 59조의2 및 제62조 신설).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한국환경한림원) ① 기후·에너지·환경 분야(이하 “기후등 분야”라 한다) 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석학(碩學)의 교류·활용을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(이하 “환경한림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환경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환경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기후등 분야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·연구, 정책자문 및 홍보 사업
2. 기후등 분야의 학계, 산업계, 연구계,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·협력사업
3.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등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
4. 기후등 분야 전문 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(保全)하는 사업
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

④ 환경한림원은 제3항에 따라 수행하는 학술 연구에 있어 독립성

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,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환경한림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이 법에 따른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한림원의 조직,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보칙”을 “보칙 및 벌칙”으로 한다.

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(과태료) ①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

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한림원(이하 “구법인”이라 한다)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환경한림원(이하 “신법인”이라 한다)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를 승계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公簿)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를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.

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회원 및 임직원은 신법인의 회원 및 임직원으로 보며, 회원 및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9조의2(한국환경한림원) ① 기 후 · 에너지 · 환경 분야(이하 “기후등 분야”라 한다) 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석학(碩學)의 교류 · 활용을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(이하 “환경한림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</p> <p><u>② 환경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환경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기후등 분야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 · 연구, 정책자문 및 홍보사업</u> <u>2. 기후등 분야의 학계, 산업계, 연구계,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 · 협력사업</u> <u>3.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등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</u> <u>4. 기후등 분야 전문 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(保全)하는</u>

사업

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

④ 환경한림원은 제3항에 따라 수행하는 학술 연구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,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환경한림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이 법에 따른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한림원의 조직,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보칙

<신 설>

제5장 보칙 및 벌칙

제62조(과태료) ① 제59조의2제7

항을 위반하여 한국환경한림원
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
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
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
· 징수한다.